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71

발의연월일: 2020. 8. 24.

발 의 자:김정호·박재호·박홍근

정춘숙 · 임종성 · 김경협

박찬대 · 김병욱 · 이은주

허종식 • 윤후덕 • 강선우

이용우 · 황운하 · 양기대

유준병 • 천준호 • 김수흥

허 영·장경태·정정순

이용선 · 송재호 · 김경만

이워택 · 이규민 의원

(2691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복무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열 람 및 유출 시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89조의4 신설). 법률 제 호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9조의4(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)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사회복무요원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9조의4(사회복무요원의 개인
	정보 유출 등) ① 사회복무요
	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
	를 유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
	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
	벌금에 처한다.
	② 사회복무요원이 권한 없이
	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에는 1
	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